제316회 서산시의회(임시회)
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

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▣ 서산시장 제출(의안번호 제64호)

2026. 10.

행정문화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

〈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〉
검 토 보 고 서

Ⅰ. 회부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64호

○ 제 출 자 : 서산시장

○ 발의일자 : 2026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13일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○ 서산 시민 대상 예방접종 사업의 확대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접종 종류 및 횟수를 정확히 제시하여 사업 운영에 일관성을 확보하며, 서산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

- 현행 :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
- 변경 : 서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

나. 목적 및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
다. 접종 종류와 횟수 추가 및 변경 (안 제3조)

라. 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 변경(안 제4조, 안 제6조)

마. 부칙(시행일, 지원 대상자, 접종 횟수 등)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「의약품 부작용 피해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

Ⅲ. 검토의견

1. 개정목적

○ 본 조례안은 기존「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,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중심의 지원체계를 인플루엔자, 대상포진,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으로 확대하고, 예방 접종별 지원대상 및 접종횟수, 비용지원, 예방접종 실시기관, 지원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모코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적 근거
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 수립 및 시

행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

- 같은법 제25조에서는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《김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》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
제25조(임시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(이하 “임시예방접종”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

2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3. 조문별 검토

가. (안 제1조) 목적

-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한정된 조례의 목적을 서산시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임
- 기존 조례의 대상포진 중심 지원체계에서 예방접종 전반으로 확대하는 전부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

나. (안 제2조) 지원대상자

- 예방접종별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
- 기존 대상포진 중심의 지원체계를 다양한 예방접종으로 확대하면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

다. (안 제3조) 접종종류 및 횟수

- 인플루엔자, 대상포진,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등 예방접종별 접종 종류와 횟수를 명확히 규정함
- 예방접종별 지원 기준과 접종 횟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것은 사업의 일관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

라. (안 제4조) 비용지원

-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마. (안 제5조) 예방접종 실시기관

-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

-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보건소 또는 관내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, 접종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됨

바. (안 제6조) 지원절차

- 지원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와 대상자 확인, 예진 및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
-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접종 이력 관리 및 중복 지원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사. (안 제7조) 환수조치
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율을 지원 받거나 정해진 횟수를 위반한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함
-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등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아. (안 제8조)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

-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피해보상 및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함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한 사항은, 예방접종 대상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판단됨

자. (안 제9조) 준용

- 예방접종 위탁 및 재정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「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와「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규정함

【참고자료 1: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】

사업개요	-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서산시 주소를 둔 자 - 접종장소 : 보건(지)소, 보건진료소 및 위탁의료기관 53개소 - 접종백신 : WHO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 백신 - 지원내용 :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
문제점 및 대 책	- 전 시민 무료접종 확대 시 대규모 예산 필요, 백신 수급 및 위탁의료 기관 참여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➔ 조례 제·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, 대상자 단계적 확대 - 자체 예방접종 시행 시 백신 수급 및 참여 위탁의료기관 지정 난항 ➔ 백신 수급 안정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건의 -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·현장 부담 증가 ➔ 대상자 급증 업무 부담 가중,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·인력 지원 필요
기대효과	- 인플루엔자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예방하여 시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-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도모
소요예산	- 인당 소요액 : 29,610원 = 백신비 10,000원 + 시행비 19,610 - 지원대상 : 18~54세 시민 (추정 : 70,000명) - 829,080,000원 = 29,610원 * 28,000명(대상인구 * 40%) - 총 소요액 829백만원

【참고자료 2: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】

<table>
<tr><td>사업개요</td><td>- 지원대상 : 접종일 기준 주민드록상 서산시에 거주지를 둔 만 60세이상시민
- 접종장소 : 보건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
- 접종백신 : 싱그릭스(사백신)
- 지원내용 : 사백신 접종비 일부지원(차수별 7만원 총 14만원지원)</td></tr>
<tr><td>문제점
및
대 책</td><td>-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시비 부담 예상되며, 고령자는 생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예방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짐.
➔ 사백신 접종으로 단계적 사업 확대 추진(연령 제한)
※ 생백신의 경우 접종 후 3년 경과 시 예방률이 37.6%까지 떨어짐. 사백신 2차 접종 1개월 후부터 10년까지 89% 예방효과 유지
- 사백신 접종시 금액 지원에도 자부담이 30만원 이상 발생하므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접종 기피 현상 발생 우려
➔ 접종 독려를 위해 1인당 지원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
※ 도내 평균 지원액 10만원 → 서산시 14만원</td></tr>
<tr><td>기대효과</td><td>- 60세 이상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예방 접종 접근성 향상
-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 예방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
-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 복지 도시 구현에 기여</td></tr>
<tr><td>소요예산
생백신
(1회지원시)</td><td>
<table>
<tr><th></th><th></th><th>60세 이상</th><th>65세 이상</th><th>70세 이상</th><th>75세 이상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추정인구</td><td>56,083명</td><td>41,914명</td><td>28,162명</td><td>18,621명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예방률</td><td>3년경과</td><td colspan="2">63.9%</td><td colspan="2">37.6%</td></tr>
<tr><td>10년경과</td><td colspan="2">20-25%</td><td colspan="2">10-15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소요예산
(백신비+시행비)</td><td>2,877백만원</td><td>3,440백만원</td><td>1,444백만원</td><td>955백만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산출기초</td><td>2,877,338,315원
=102,610원×28,042명</td><td>2,150,397,770원
=102,610원×20,957명</td><td>1,444,851,410원
=102,610원×14,081명</td><td>955,350,405원
=102,610원×9,311명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인당 소요액</td><td colspan="4">102,610원 (본인부담금 없음)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소요예산
사백신
(140,000원
일부지원시)</td><td>
<table>
<tr><th></th><th></th><th>60세 이상</th><th>65세 이상</th><th>70세 이상</th><th>75세 이상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추정인구</td><td>56,083명</td><td>41,914명</td><td>28,162명</td><td>18,621명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예방률</td><td>3년경과</td><td colspan="2">97.4%</td><td colspan="2">91.3%</td></tr>
<tr><td>10년경과</td><td colspan="2">80%이상</td><td colspan="2">73-80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소요예산
(백신비+시행비)</td><td>3,925백만원</td><td>2,933백만원</td><td>1,971백만원</td><td>1,303백만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산출기초</td><td>3,925,810,000원
=140,000원×28,042명</td><td>2,933,980,000원
=140,000원×20,957명</td><td>1,971,340,000원
=140,000원×14,081명</td><td>1,303,470,000원
=140,000원×9,311명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인당 소요액</td><td colspan="4">140,000원 (본인부담금 약 36만원)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【참고자료 3: 자궁경부암(HPV) 예방접종 남성 청소년 확대】

사업개요	- 지원대상 : 13세~17세 주민등록상 서산시 주소를 둔 남성 청소년 - 접종장소 :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 14개소 - 접종백신 : HPV 4가 - 지원내용 : 2027. 1. 13~17세 남성청소년 HPV 옙방접종 확대 지원 2028. 1. 13~17세 미접종자 HPV 예방접종 지속 추진
문제점 및 대 책	- 지자체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 ➔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를 통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- HPV 예방접종 확대 시 백신 단가가 높고 15세 이상자는 3회 접종 필요 ➔ 14세 이하자가 적기 접종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 -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중복 관리 및 접종 이력 확인 필요 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 및 접종 이력 관리 강화
기대효과	- HPV 감염 및 자궁경부암, 항문암 등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, 청소년 건강증진과 예방접종 형평성 제고
소요예산	- 인당 소요액 : 92,080원 = 백신비 72,470원 + 시행비 19,610 - 지원대상 : 13~17세 남성 청소년 (대상 인구 중 40%, 1,790명) - 14세 : 64,087,680원 = 92,080원 * 348명 * 2회 - 15세이상 : 398,338,080원 = 92,080원 * 1,442명 * 3회 - 총 소요액 462백만원

5. 종합검토의견

가. 본 조례안은 기존의「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에만 국한된 지원 체계를 인플루엔자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까지 확대하여, 서산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

나. 상위법인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도 지자체가 예방접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,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,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

다. 또한 예방접종별 지원 기준에 연령별, 접종횟수, 비용지원, 접종기관 및 지원 절차등을 명확히 하고 있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음

라. 다만 27년부터 5년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총 소요액이 89억300만원으로 추계되어 있고 전액 시비로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실제 접종률 등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라.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